



참여자치진북시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Autonomy in Chunbuk

수신자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경 유) : 담당자

제 목 :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유권해석 요청 (붙임포함 총 31쪽)

1.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참여자치진북시민연대는 1999년 창립하여 부정부패 감시, 지역민생 보호, 시민권리 지키기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2018년 12월 3일 완주군이 위촉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9년 ~ 2022년 완주군의회 의정비 결정사항과 관련해 다음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① 완주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②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③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개최로 정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④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2월 27일 개최한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사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4. 위 내용에 대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니 참고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유권해석되는 경우 완주군 또는 행정안전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 감사합니다.

붙임.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박경기 백종만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



담 당 박 우 성 (투명사회국) 사무처장 이 창 엽
시 행 2019-1 호 (2019.2.27.) 접 수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기업은행4층 홈페이지 <http://www.pspa.or.kr>
전 화 (063) 232-7119 / 전 송 (063) 232-8119 / 이메일 jbngo@pspa.or.kr / 공 개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2019~2022년 완주군의회 의정비 결정사항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을 중심으로)

① 완주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ㄱ)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그러나 별첨한 위촉 위원 명단(별첨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ㄷ) 완주군 기획감사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인사추천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례는 완주군 소재 우석대학교에 대한 협조공문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ㄹ) 완주군에는 지역의 특성상 전주에 소재한 다양한 각계 기관 및 단체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 협력하고 있으면서 거주지는 완주에 두고 있는 주민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완주군은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각계의 인사를 추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ㅁ)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명단 10인의 소속을 보면 이장 및 마을대표, 주민자치위원 등이 5명,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관계자가 4명이어서 완주군 및 완주군의회와 긴밀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ㄱ) 법령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별첨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별첨2)을 보면 “이분들도 집에서는 가장이고 자기 자식들도 있음. 근데 애경사 참가해서 경조사비 내다보면 남는 게 없음”이라거나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많이 올렸다고 질타 받고 적게 올렸다고 질타 받지 않

는 것은 아님”이라면서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한 의견만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법에 의해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기획팀장의 안내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기준이지 인구수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거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생각함”이라거나 심지어 “저희가 몇 %를 올리든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정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듬. 현재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임.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며 비밀투표를 해서 평균치를 내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ㄷ) 결국 심의위원들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고려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지표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은 채로 각자가 제안하는 인상률을 제출해서 산술평균하여 21.15%라는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ㄹ) 별첨한 의정비 공청회 참고 자료(별첨3)를 보면 완주군의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14년 9,553명에서 2017년 8,725명으로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2018년 24.08%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4년 간의 의원 1인당 의안발의 연평균 건수는 시군구 평균에 비해 약간 높지만(1.18 : 1.07)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회기 일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의정비 인상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개최로 정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ㄱ) 회의록을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지금도 많은데 또 인상을 하려 한다고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이라거나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힘듦”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민의 일반적인 여론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개최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에서 드러나는 ‘주민의 실제 의견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ㄷ) 오히려 제한된 주민만이 참석 가능한 공청회에 특정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 전체 주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지역 시민사회 및 언론의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ㄹ) 실제로 공청회에는 150여명 남짓한 주민이 참석하였을 뿐이며, 토론 과정에서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 형식의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추가 발언 요청을 의장이 제지하고 무리한 진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했습니다.

④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2월 27일 개최된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사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ㄱ) 완주군은 별첨한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별첨4)를 고시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공청회에서 사실상 의정비를 결정하는 투표 방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ㄴ) 이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도 공청회 현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ㄷ)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행안부의 설문조사 표준문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문 조사지를 공청회에서 마치 투표하는 것처럼 수집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직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급조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ㄹ) 결론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마련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연령·거주지역·직업 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여 주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대신한 공청회가 나름의 합당한 의정비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려면 공청회의 토론 방식과 발언 등 진행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설계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했다는 것입니다.

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과정은 지역 주민 간의 불신과 갈등만을 남기게 된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효화해야 마땅합니다.

- 별첨
1.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2.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차~3차
 3. 의정비 공청회 참고자료
 4.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2019~2022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완주군 의정비심의회위원회 위촉 위원 명단

일시 : 2018.12.3.(월) 16:00/ 장소 :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위)	비고
1	김원호	남	고산 이장협의회장	
2	김종인	남	경천 싱그랭이마을 대표	
3	박용섭	남	자영업	
4	신앵자	여	완주군여성단체회장	
5	안미옥	여	삼례 비비정 이장	
6	오경남	남	동상 은천 이장	
7	임필환	남	완주군새마을회장	
8	전택균	남	완주4H 본부장	
9	조인철	남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 수석부회장	
10	최경자	여	이서주민자치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일 시	2018. 12. 3(월)[16:00 ~ 17:00]	장 소		4층 중회의실
참석상황	재 적	참 석	불 참	
	10	10		
안 건	의정비 결정 절차 설명 및 차기 일정 등 논의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심의위원 대상자 소개 및 인사 - 위촉장 수여 - 군수 인사, 의장, 부의장 인사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 관련 설명(배부된 자료 설명) 및 답변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비 산출하는 산식이 기존에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 있었음. 산식을 법령에서 삭제하고 의정비를 산정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최소항목을 법령에서 제시 -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먼저 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 있음 - 이 4가지 기준 항목을 고려해서 의정비 산식을 참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식을 만들어서 금액을 결정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시기는 4년에 1번씩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개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음 - 올해 같은 경우는 월정수당 금액을 인상 또는 동결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 - 위원 구성은 각계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로부터 추천 받아서 위원은 10명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음 - 오늘 위촉을 받은 위원의 명단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주민에게 알리게 되어 있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어 있음.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되어 있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2,987,840원이 월기준으로 완주군 의회 의원 의정비가 되겠음 -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35,854,080원이 됨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 결정액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감안해 현재의 완주군 월정수당 대비 2019년 월정수당을 계산하면 1,936,924원이 되겠음 - 이 2.6% 이상 인상을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음. 그냥 듣는게 아니라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공청회 방식이 있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완주군의원 의정비를 2.6% 이상 올린다고 잠정 결정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견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ARS보다 CATI 방식,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 질문을 읽어주고 그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입력하는 조사방식인데 이방식이 좀 더 정교한 방식임 - 여론조사 설문지 같은 경우도 행안부 지침에 표준 질문 문항이 있음. - 의정비 심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설문지를 만드는게 아니라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음. 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차후에 배포하겠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인상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됨. 2019년도 결정금액을 4년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2019년 의정비 결정 금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올릴 것이냐 아니면 격년으로 올릴 것이냐 이것도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여론 조사 항목에 넣어 주민 의견을 들어 반영하게 되어 있음.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은 언제까지 하는 건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2월 31일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부부는 주민의견 수렴인데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공청회로 할 것 인지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공청회 주재자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되겠음. - 위원장께서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과 결정 사항 발표와 진행을 해야 됨 - 공정청회를 통해서 수렴한 결과는 반드시 의정비 심의회에서 회부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주민들이 동결 또는 인상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동결 또는 인상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음. -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동결 또는 인하해라는 주민 의견이 많으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하지 못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에서 의견이 많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서 공청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 의견이 나올텐데. 간이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음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자리에서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과 유사하게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지를 드려서 설문지를 체크한 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음 -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인상이자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동결하자, 인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게 되면 설문지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는 몇 년이나 동결되었는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2014~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변동된 내역을 표로 만들어 배포했음. - 저희 군 같은 경우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4번째 정도 되는 금액임 - 그리고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6개 그룹으로 나누었고 완주군이 속한 것은 82개 군부 지자체인데 군부 지자체의 경우 월 1,655,930원임 -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똑같이 하지 않고 그룹을 6개 그룹화 시켜서 그 그룹에 맞게 의정비를 상대적으로 비교 심의하라는 사안임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000위원	- 의정활동비는 올릴 수 없는지?	
기획팀장	- 의정활동비는 시행령에서 범위안에서 동일하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지자체가 이금액으로 하고 있음, 최고 금액으로 전국이 동일한 금액임 -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은 월정수당이라고 보시면 됨	
000위원	- 인상하려면 한다면 월정수당만 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팀장	- 의정활동비는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전국이 그렇게 하고 있음	
000위원	-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적절한 선에서 의원 수당을 올리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000의원	- 저도 동의함.	
000위원	- 완주군의원 월정수당을 2.6%인 1,936,000원 이상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공청회로 하면 어떨지?	
기획팀장	- 그 부분은 정식으로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1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일정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기획팀장	- 마지막으로 향유 계획은 어차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임 - 저의가 잡은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정비심의회가 구성하고 - 2차 회의는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14일 이전에 공포해서 14일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함. - 2차 회의는 12월 10일한으로 잡아봤고 인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12월 중순경으로 잡았음. - 의견조사 끝나면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하는 3차 회의를 12말 한으로 최종 결정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계획했음 - 의정비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다음연도에 의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의정비가 최종 확정하고 소급해서 지급하게 됨 - 이상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음	
기획팀장	- 궁금한 사항은 1차 회의 때 답변을 드리고 이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호선으로 선출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000위원	- 저는 전택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팀장	- 전택균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분은 없으신지?	
000위원	- 전택균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함	
모든 위원	- 저희도 전택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위원님들 동의로 전택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됨 - 전택균 위원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 듣고 1차 회의를 진행하겠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 심의에 적극 협조. 같이 동참해주시면 좋겠음. 감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향후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 일단 행정에서 계획한 계획안을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 2차 회의는 12월 10일날 하면 어떨지?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주에 제가 해외에 나가는 관계로 위원님들 일정이 없다면 이번주 7일 날 하시면 어떨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회의를 하게 되면 12월 10일 이전에도 협의를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음. - 여기서 개인 일정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음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도 결정해야 될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시 어떤가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날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음 - 10시쯤 좋을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시가 좋겠음.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 	
모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없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7일 10시로 결정 - 의사봉 3타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회의 장소는 여기인가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여기 중회의실 똑같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날 의정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수, 지방재정 자립도, 예산 등 데이터 제공하겠음 - 전국수치를 비교가 되서 네 개 항목이 증가요인인지 인하요인인지 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날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음 - 전국적인 공청회 사례가 있으면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음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위원장만 선출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는 위원장님만 선출하게 되어 있음 - 보조는 행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예전에는 산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 타 지자체 하고 있는 자료 얻게 되면 예시로 말씀 드리겠음. - 도내 시군 동향을 보면 지금 군산, 정읍, 장수, 임실 정도가 확정 또는 진행중임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의정비 심의회가 어디어디 진행중인가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26개 광역, 기초단체가 동시에 진행중임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0%를 넘게 되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한번 주의 분들 여론조사 해보셔가지고 2차 회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음 - 전주시 의정비가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민이나 전주시민이나 생각하는 것은 똑같으니 인상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 큰 무리없이 금액을 정해주시는 것이 받는 군의원님들도 떳떳하고 주는 행정에서도 부담이 없고 결정하는 저희 심의위원도 보람과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수나 예산을 감안해서 기초 시군구를 6개로 나눈 분류 중에 하나임 - 전주시는 50만 이상의 시의 해당 되서 인구수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의정비가 높은 사항임.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이 도내에서 높은 상황임 - 완주군은 82개 군부에 해당됨.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부터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만 인상된다는 거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의정비도 결정하지만,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릴 것이냐, 2019년도에 결정한 사항으로 동결할 것이냐, 격년제로 할 것이냐 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됨.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 같은 경우는 2.6% 못 올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5.7%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여론조사에서는 동결로 나와 버려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하는 사항임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제7대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결정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인상한 곳이 경기 양평군으로 21.8% 이상을 인상을 사례가 있음. - 10%이상 자치단체 군 단위는 4개가 있고 -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때 금액이 연 1,782만원.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았음 - 그리고 최하로 했던 자치단체가 마이너스는 없고 동결 또는 1~2%까지는 대부분 인상하였음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들은 퇴직금이 없는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연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퇴직금이 없음.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음.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의원 급여가 공무원 5급 정도 수준은 되는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급여로는 5급 수준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됨. - 7~6급 정도 수준으로 생각됨. 	
000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만원이면 6급 수준은 못 될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회의는 12월 7일(금) 10시에 개최하겠음 - 의사봉 3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7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음 - 수고 많으셨음. 감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일 시	2018. 12. 7(금)[10:00 ~ 11:20]	장 소		4층 중회의실
참석상황	재 적	참 석	불 참	
	10	10		
안 건	의정비 결정 절차 설명 및 차기 일정 등 논의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제2차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법령에 의해 회의 진행 사항은 공개할 수 있으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2/3이상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 - 오늘 2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겠음 - 동의하십니까? 			
모든 위원	- 동의함			
위원장	- 그럼 오늘 2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겠음 -의사봉 3타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바로 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의정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음 -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거니까 토의를 한번 하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음 - 다른 분 의견에 치우치지 말고 본인의 의견만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보면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지표가 중요할 것 같음 - 모든 지표를 검토해서 원만한 인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임 - 특히, 주민의 여론이나 주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간과해서 물론 많이 올려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음 - 인상안에 대해서 고려사항인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원 각종 활동 사항 등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적정선으로 인상안을 산정해주시면 좋겠음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 000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람.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위원님께서 인상쪽으로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저도 동의하고 말씀하신대로 주변들의 상황도 반영해야 하는 것 같음 - 너무나 작게 인상하는 것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것 같기도 함 -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인구수, 그다음에 의원님들 실적,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인상하였으면 좋겠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 말고 다른 걸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성으로 나가는 것은 의정비가 있고 -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은 일정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다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자료를 보니 월 188만원이 수당이고,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월 300만원 정도 받는데 그 돈 가지고는 자기 혼자 가정 생활하는데도 모자람. - 제약이 많이 걸리고 만일에 부인이 좋은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 돈으로 해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의원은 다른 목적의 사업이나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의정비 가지고는 생활하는데 많이 부족할 것 같음. - 몇 %로 인상 얘기해도 되나요? - 20%정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월 40만원 정도, 연으로 하면 의원 한 사람당 400~500만원 정도 더 지출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말씀 감사. 000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들 회기일수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의원들이 회기일수만 일 하는 게 아니고 또 의원은 겸직을 못함. 완주군의원 열 한분은 겸직을 하신 분이 한분도 없음. 회기일수만 일 하는 게 아니고 회기 없는 날은 지역의 모든 일에 다니면서 우선은 민원처리를 제일 많이 함. 의원 활동 실적을 회기 일수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음 -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언론이나 여론의 눈치를 봐서 한 5% 정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질타를 받음. - 개인적으로 의원 세비를 좀 알고 있음. 의회 세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함. - 분명이 2.6% 올려도 그 이상해도 질타는 받음 - 누구나 남들은 올려주는 거는 싫어함. 심지어 공무원들도 2.6% 이상 인상하는 것 싫어할 것 같음. 그 부분은 만약에 몇 %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안고 가야될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 함. - 저도 올리는 것은 동의하는데 저는 %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을 산정 하는게 좋겠음. - 현재 연 3,58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의정활동 활동하는데 부담이 덜 될거라 생각 - 이분들도 집에서는 가장이고 자기 자식들도 있음. 근데 애경사 참가해서 경조사비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000 위원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의. 그런데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많이 올렸다고 질타 받고 적게 올렸다고 질타 받지 않는 것은 아님. - 자기 논 팔아서 의원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애경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임. - 맞벌이라도 하면 모를까 힘든 상황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인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세비를 빼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는 의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듬 - 앞으로 가면 젊은 사람들이 누가 의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음. -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던 저는 인상하는 것을 25%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000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님들 말씀이 다 좋은 말씀.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무턱대고 인상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저도 인상 쪽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 혹시 완주군 의원님들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는 연 3,580만원 정도임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냐하면 신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 연봉이 그보다는 많게 보도된 것 같음.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을 보면 의장 같은 경우 연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연봉이 의정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쳐 연 평균 7,600만원이 넘는 걸로 나오고 -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도 5~6천만원이 넘는 걸로 나왔고 - 일반의원들도 4,5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 신문을 보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많은데 또 인상을 하려고 한다고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연봉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서 나온 금액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의원들도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카드로 쓸 수 있는 선은 월 250만원 정도, 부의장은 130만원 정도, 상임위원장들은 월 8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 다음 000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들이 옛날에는 봉사직이었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경조사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정치헌금이 정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유망주들이 정치로 뛰어들기가 힘든 게 현실임. - 그런 유망한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봉급이 책정이 된 만큼 인상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책정하셔서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음. - 제가 전국에 데이터를 좀 봤음. 전국에서도 지금 이슈임. 언론에서는 어차피 대서특필해서 봉급을 많이 안 주는 쪽으로 갈려고 할 것임.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인지 저희들이 토론해서 하나둘씩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게 좋겠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000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이런 위원직에 처음임 - 제가 000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활동비가 없음. 무보수임 - 밖에서 듣기로는 저도 4,000천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저도 행사 안 부르는 데가 없는데 하물며 의원님들은 저희보다 공사가 다망하니까 월정수당 올리는 것은 저도 찬성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000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2~3일 생각해봤음. 메모도 한 거 가서 읽어 보기도 했고 1차 회의 내용도 집에 가서도 많이 보고 했음. - 요즘에 의원들의 활동영역이 많이 넓어졌고 여러 공사다망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현재 3,600만원 정도인데. - 저도 가정 주부지만 여러 다양한 곳에 참여하고 있어 저는 여자인데도 많이 나감. 남편이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하기 힘들 - 하물며 의원들은 저희보다 활동영역도 넓고 열심히 해달라는 응원의 의미로 올려주고 싶음. - 놀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올려주려고 심의 해서 책정하는 것이니까 저는 22.5%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음. - 어느 선에서 하는게 좋을까요? - 000 의원님께서는 22.5% 그 선에서 말씀하셨는데 - 다른 의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고 저희는 그걸로 접근해야 함. - 정으로 하는 것은 군민들이나 여론에서 이해를 해줄 수가 없음 - 각종 지표도 보고 군 재정자립도도 보고 그런 것이 논의 되어 야만이 언론이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서 조금이나마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음 -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의정활동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함 - 인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 과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의결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약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봐야 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 계신가요?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 그러나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힘들. - 좀 전에 000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받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 더군다나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애경사비로도 사용하지 못함. 거의 식대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한테 사용함. -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보수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임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가 급여 인상한다고 업무추진비가 인상하는 거는 아니 자나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름,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 해서만 쓸 수 있음. -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수당이 월188만원 정도죠? 지금 거기에 대한 인상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이 올라가는 것은 아님. -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만 결정하면 되는 것임. 업무추진비 등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함. - 188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인상해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좋겠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음. -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의정비 산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 4가지 자료를 드린 것임. - 산식은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음. 거기에 대한 제약은 없음. -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재정 자립도, 지방의회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해서 이 4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음 - 지역 주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 대비 2017년 446명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34%에서 2018년 24%로 하락한 걸로 되어 있음. - 지방의회 실적으로는 연평균 회기 일수하고 의원발의 실적을 행정안전부 공시자료에서 고려하게 되어 있음. -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기준 완주군 연 평균 회기일수는 68일로 전국 시군구 회기 일수 평균과 비교를 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음. 다만 전국 시군구의 회기 평균 일수 2014~2018년도 자료는 없음 - 원래 같은 기간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지만 2014년 이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2010~2014년 자료 대비 완주군 의회공시자료를 비교하면 되겠음. - 그래서 2014~2018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2010~2014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걸로 되어 있음 - 이 사항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기준을 결정하시면 되겠음. - 그리고 의원 1인당 의원발의 실적은 2014~2017년 시군구 의원 1인당 평균 의원발의건수 대비 완주군 자료를 비교하시면 됨. - 그리고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6%)도 산정하는데 고려해주시기 바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전라북도 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지역주민수하고 재정능력이 좋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기준은 아니자나요? 기준이 없음 - 군산이 잘한다, 익산이 잘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음?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기준이지 인구수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거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생각함. -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의원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인구가 적다고해서 의원이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오히려 시골 쪽에 일이 더 많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은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임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현황을 보면 주민수가 전주 군산 익산 다음에 완주군인데 이 사항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음. -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보다 2018년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주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할 것 같음. - 의원회기일수나 발의 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까 이런 점을 따져봐서 몇 % 인상하는데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음. - 지표를 가지고 충분히 살펴 보시고 완주군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중의를 모았으면 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수를 60%, 의정활동을 30%, 재정자립도를 10%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 위원님들도 고려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결정하면 어떨까요?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거는 없음. -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의견조사 때 설문으로 최고 22.5% 인상, 인하되었을 때 5.6% 정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결정액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의견 말씀해주시죠?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님들 3~4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임 - 제가 신문을 봤는데 완주군 의원 연봉 등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 많이 보도 되었음. 신문사마다금액들이 조금씩 다른데 기준은 잘 모르겠음. - 사실상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등을 심의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군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월정수당만 심의하면 될 것 같은데 - 저희가 몇 %를 올리든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정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듬. - 현재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임.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제안을 하나 드리겠음. - 어느 정도 이야기 하다가 비밀투표로 기재해서 평균치를 내면 어떨까요? - 서로 누가 몇 %로 주장했는지도 모를 것이고 하루 종일 이럴 수는 없음 	
모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의견임. 동의함.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4대 보험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 서도 4대 보험은 사업주가 다 지급해 주지 않나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비밀투표로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위원회에서 이렇게 방식을 선정하면 결정되는 건가요?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에는 전국 공통된 산식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산식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하신 것은 가능할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월정수당 인상률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몇 %를 적어서 비밀투표 후 집계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하겠음. 동의하십니까? 	
모든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봉 3타, - 그럼 비밀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앞에 있는 메모지에 각각 인상률을 적어 주시기 바람. - 집계 후 평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계해서 평균 확인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21.15%로 나왔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상한선은 안 넘었죠?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넘었음 - 그러면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21.15%로 결정할까요? 	
모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21.15%로 결정하는 걸로 확정함. -의사봉 3타 -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수고들 하셨음. 위원님들의 뜻있는 생각과 경륜으로 의견이 나왔음. 감사.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시만요? 하나 더 의결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음. -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 여부와 인상률도 함께 결정해주셔야 함. - 2019년도 결정한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로 결정할 것인지 여기서 2020~2022년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는 없음. 그리고 격년으로 인상할 것인지도 정해주셔야 함.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인상할 것인지 2019년도 결정한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격년으로 인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 의견 있는 위원님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주시죠? 	
모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동의하십니까? 	
모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봉 3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으로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알겠음. - 그리고 여론 수렴 방식도 결정해주셔야 할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초과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함. -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공청회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야 하니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공청회로 했으면 좋겠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로 했으면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좋은 의견 있는 분 말씀해주시기 바람. 	
일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함.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빨리 공청회로 결정한 거 아닌가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모든 위원	- 없음	
위원장	-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결정되었음. 의사봉 3타	
기획팀장	- 그리고 위원장님~ 공청회 일시도 정해주셔야 함. - 공청회는 법적으로 14일 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빠른 날짜가 24일임. 25일은 크리스마스이고 그 이후로 정해주셔야 할 것 같음.	
위원장	- 그럼 공청회 날짜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시죠?	
000 위원	- 저는 샌드위치 데이 인 24일 날이 좋을 것 같음	
000 위원	-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으니 저는 26일로 하면 좋겠음. 그리고 오전에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지금 24일하고 26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 000 위원님 말씀대로 26일 오전이 좋을 것 같음. 오전 10시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음.	
위원장	- 그럼 공청회는 26일 오전 10시가 어떨까요?	
모든 위원	- 그날이 좋을 것 같음. 동의함.	
위원장	- 그럼 공청회는 12월 26일 10시로 결정되었음. 의사봉 3타 - 공청회 진행은 어떻게 하죠?	
기획팀장	- 주재자는 위원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음. - 그리고 발표자는 신청자를 접수 받거나 행정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음 - 발표자는 위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인사가 될 수도 있음.	
기획팀장	- 그리고 잠시 아까 결정한 월정수당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모든 위원	- 다시 한번 검토	
기획팀장	- 원단위는 삭제했음. 금액은 이상이 없으시죠?	
위원장	- 금액 검토 다 되셨나요? 이상 없나요?	
모든 위원	- 이상 없음	
기획팀장	-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은 이상 없는 것 같음 - 그리고 하나 더 의정활동비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의결해주셔야 하고 여비 부분도 확인하셔서 의결을 해주셔야 함.	
000 위원	- 정확히 내용은 어떤 걸 봐야죠?	
기획팀장	- 회의 자료로 나눠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사항을 확인하시면 됨	
위원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제1호 별표4의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제2호 별표5의 여비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지급 범위 내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하면 될까요?	
모든 위원	- 동의함.	
위원장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모든 위원	- 이의 없음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법령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급 범위 내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하겠음. 의사봉 3타	
000 위원	- 그리고 좀 전에 공청회에서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산식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팀장	- 행정에서는 별도로 산식은 낼 수는 없고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평균 산술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공청회 때도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음. - 저희가 공청회 홍보는 다양하게 할 것임 - 공청회 장소는 인원이 많이 올 것 같아서 500석 규모의 문예회관으로 장소를 정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음.	
000 위원	-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도 50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공청회도 50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맞을 것 같음. - 의정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다수 의견 수렴이 어려울 시 공청회 당일 날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체크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설문지 안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는 어떻게 만든거죠?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여론조사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으로 해서 금액하고 범위를 선정한 설문지 안이 있음. 그 안을 참고 해서 설문조사를 고려하고 있음. 	
00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은 바꿀 수 없고 추가 항목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넣을 수는 있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홍보는 저희가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보에 게재하고, 군 SNS, 그 다음에 읍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려고 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때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금액과 결정 이유, 설문지 등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주제는 위원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의정비 결정액 이라든가 결정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주제자인 위원장님이 하시면 됨. - 그리고 토론하실 때 설문지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발표자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음.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님! 오늘 결정된 사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정수당(22,654,080원) 대비 21.15% 인상된 연 27,445,32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음. - 두 번째 2020~2022년 월정수당 결정 방식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으로 결정되었음.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 2021년도에는 2020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 2022년도에는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으로 결정되었음. - 세 번째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급범위 내로 지급하는 결로 결정되었음. -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수렴 방식은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공청회는 12월 26일 10시에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니 그 날 위원님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 위원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 이상으로 완주군 의정비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3차)

일 시	2018. 12. 27(목)[9:00 ~ 10:00]	장 소		4층 중회의실
참석상황	재 적	참 석	불 참	
	10	9	1	
안 건	주민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 반영한 의정비 최종 결정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어제 공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어서 어제 공청회 때 회수된 설문조사함을 개함하여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입회 하에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 설문지함 개함 및 설문지수 집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된 상태에서 집계하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기획팀장	- ‘낮다’, ‘적정하다’, ‘높다’ 세 가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하고 각 문항별 가장 많이 체크가 된 설문보기항목을 다수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 설문지가 총 128개로 집계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죠?			
000 위원 000 위원	- 설문지수 검수, 설문지 128개 ‘이상없음’ 확인			
위원장	- 총 128표 맞습니까?			
모든 위원	- 맞음			
기획팀장	- 다음은 ‘낮다’, ‘적정하다’, ‘높다’ 로 분류작업 해주시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000 위원	- 무효표도 있습니까?	
기획팀장	- 무효표는 따로 빼주기 바람	
기획팀장	- 지난번 2차 회의 때 2020~2022년 월정수당 결정 방식, 의정활동비, 여비 등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사항은 공청회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해서 2019년 월정수당 부분만 최종 결정해주시면 되겠음.	
직원들	- ‘낮다’, ‘적정하다’, ‘높다’ 로 집계 완료	
위원장	- 위원님들 세 가지로 분류된 설문지 검수 한번 해주시죠?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 ‘낮다’ 74표 - ‘적정하다’ 36표 - ‘높다’ 18표 검수 확인	
위원장	- 설문지 결과는 의정비 최종 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거듭 말씀 드림. - 설문지 검수하신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000 위원	- 5번 문항과 6번 문항을 중복 표기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해야 할 것 같음. - 위원장님께서서는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 여러 문항을 중복 표기했을 경우 무효표로 하겠고 또한 한 문항에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도 무효표로 하겠음. -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000 위원	- 저도 한 문항에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와 여러 문항에 같이 표기한 경우는 무효표로 하며 좋겠음.	
위원장	- 000 위원님께서 두 가지 경우에 무효표로 하자는 의견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습니까?	
모든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위원장	- 그러면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는 무효표로 하겠음. 의사봉 3타	
000 위원	- 그럼 다시 집계를 해야 하겠네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장	- 다시 분류해서 무효표를 빼주셔야 할 것 같음.	
직원들	- 무효표 제외 재집계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 무효표 제외 재집계 검수	
기획팀장	- 재집계 완료하였음. 위원장님께 집계표 전달 바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표를 발표하겠음. - 총설문지수는 128표, 유효표가 82표, 무효표가 46표 - 유효표 중 '낮다'가 44표, '적정하다'가 22표, '높다'가 16표로 나왔음. - 일단 결과는 '낮다'와 '적정하다'가 66표가 나왔고 이것으로 공청회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은 결정이 된 것 같음. 이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한 21.15% 인상 그대로 해도 될지 의견을 묻겠음. 어떻게 할까요? 	
000 위원	- '적정하다'하고 '낮다'가 82표 중에 68표면 거의 압도적인데 군민들의 여론이 묻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1.15% 인상으로 갔으면 좋겠음.	
위원장	- 000 위원님은 지난번 결정사항인 21.15% 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의견에 찬성 하십니까?	
모든 위원	- 찬성함.	
위원장	- 모두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1.15% 인상으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음. 의사봉 3타	
위원장	- 그 동안 몇 차례 회의와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오늘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 의정비 공청회 참고 자료 ◆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시 기준안

○ 의정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① 2019년도 월정수당 21.15% 인상 : (현행)2,265만원 → (변경) 2,744만원
- ② 2020~2022년도 월정수당 :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③ 2019~2022년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
 - 의정활동비 : 법령 기준 최대금액(연1,320만원)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의정비 관련 참고자료

1. 2017년말 기준 인구수 : 인구 95,975명 / 의원 1인당 인구수 8,725명

(단위 : 명)

2014년		2017년	
인구수(A)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인구수(B)	의원 1인당 인구수(나)
95,529	9,553	95,975	8,725

2. 재정능력(재정자립도)

(단위 : 원, %)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A)	자치단체 예산규모(B)	재정자립도 (A/B×100)
2014년도	183,643,766,000	535,781,350,000	34.28
2018년도	135,931,721,000	565,678,864,000	24.03

3. 의정활동 실적

① 의원 1인당 의원발의 건수

(단위 : 건)

2014~2017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연평균	
	완주군	시군구 평균	완주군	시군구 평균	완주군	시군구 평균	완주군	시군구 평균	완주군	시군구 평균
의원 1인당 의원발의 건수	1	0.56	2.2	1.2	0.7	1.1	0.8	1.4	1.18	1.07

② 회기일수

(단위 : 회, 일)

구 분	시군구 평균		완주군 평균	
	회의수	회기일수	회의수	회기일수
계	7.0	66.3	6.8	68

4.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2.6%

완주군 공고 제2018 - 호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2019~2022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2019~2022년)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2. 7.

완주군수

- 1. 제목 :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2019~2022년) 결정을 위한 공청회
- 2. 일시 및 장소 : 2018. 12. 26(수) 10:00~12:00, 완주군청 문예회관
- 3. 주요 내용 :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구 분	의정비 잠정결정 연간 금액(천원)			비 고
	합 계	월정 수당	의정활동비	
2019년	40,645(월3,387)	27,445(월2,287)	13,200(월1,100)	월정수당 21.15% 인상

-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가) 발표자(완주군민) : 6명 내외 선정(신청 및 추천자 중에서 선정)
 - 나) 발표시간 : 패널 1인당 5분 이내 발표 및 질의·답변
 - 다) 유의사항 : 공청회의 발표와 토론은 심의회의 결정금액과 결정이유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발표자는 의정비·여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하여야 함(다른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표할 수 없습니다.)
-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가)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 또는 서면(붙임 1 양식) 신청(FAX 063-290-2051)
※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팩스 송부시, 063-290-2102로 반드시 전화요망)
 - 나) 발표(패널) 신청기한 : 2018. 12. 17(월)
-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붙임 2 양식)
 - 가) 제출방법 : e-mail 제출(lssbear@korea.kr)
 - 나) 제출기한 : 2018. 12. 17(월)
-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시 유의사항
 - 가) 완주군민에 한하여 발표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나) 발표자 및 의견을 제시할 방청인께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